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12. 13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
제5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12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 김인문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
-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
-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-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17.12.31.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폐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.

- 주요 개정 내용은
 - 안 제5조제5항은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” 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,
 - 안 제5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“2017년 12월 31일” 에서 “2022년 12월 31일” 로 연장하였고,
 - 안 제6조제5항에서 위촉된 위원 임기를 “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” 를 “2년으로 한다” 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으며,
 - 안 제11조제4항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비율을 “10분의 5이하” 를 “10분의 2이하” 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함.

-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0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,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구 거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내실있게 운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기금 예탁 조항 삭제(안 제5조)
- 나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5조의2)
- 다. 구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의 축소 (안 제11조)
- 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 · 성별영향분석평가 ·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9.28. ~ 10.18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에 따른”으로, “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”을 “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의2 전단 중 “2017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6조제5항 본문 중 “하되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제11조제4항 단서 중 “5”를 “2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<u>의하여</u> 운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、③ (생략)</p> <p>④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<u>당해연도</u> <u>이자수입 범위안에서</u> 지원하여야 한다.</p> <p>⑤기금의 <u>여유자금</u>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<u>예탁</u>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7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<u>하되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</p>	<p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----- ----- 따라----- -----.</p> <p>②、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제4조에 따른 ----- ----- <u>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</u>----- -----.</p> <p>〈삭제〉</p> <p>제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<u>2022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</p> <p>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----- ----- ----- ----- 한다. ----- -----</p>

직위를 상실한 날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⑥ (생략)

제11조(기금운용의 계획) ① ~ ③
(생략)

④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기금운용의 계획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
④-----

-----.
----- 2 -----
-----.